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228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12월 17일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동 개정조례안에 명시된 “「학교시설 석면 해체·제거 가이드라인」” 지침명이 2019년에 “「학교시설 석면 해체·제거 안내서」”로 개정됨에 따라 “「학교시설 석면 해체·제거 안내서」”로 수정하고자 함.
- 또한 모니터단 구성원으로 포함된 “학생”은 안전 및 건강권 측면에서 모니터단 구성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고, “교육지원청 시설담당 공무원”은 공사감독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구성원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“「학교시설 석면 해체·제거 가이드라인」이”를 “「학교시설 석면 해체·제거 안내서」가”로 수정함(안 제12조제1항).
- 나. 모니터단의 구성원으로 “학생회가 추천하는 학생”과 “교육지원청 시설담당공무원 1명”을 삭제함(안 제12조제2항제3호, 제8호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「학교시설 석면 해체·제거 가이드라인」이”를
“「학교시설 석면 해체·제거 안내서」가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, 제5호, 제6호, 제7호를 각각 제3호, 제4호, 제5호,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7호로 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12조(학교 석면 모니터단)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석면공사가 확정된 경우 「<u>학교시설 석면 해체·제거 가이드라인</u>」이 규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학교 석면 모니터단(이하 “모니터단”이라 한다)을 구성·운영한다.</p>	<p>제12조(학교 석면 모니터단) ① ----- ----- ----- 「<u>학교시설 석면 해체·제거 안내서</u>」가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<신 설></p>	<p>②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되, 공사규모에 따라 학부모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교의 장 또는 학교 교감 2.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3. <u>학생회가 추천하는 학생</u> 4. 학부모회가 추천하는 학부모 5. 공사 감리인 6. 석면에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 	<p>② (개정안과 같음)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개정안과 같음) 2. (개정안과 같음) 3. <삭 제> 3. 학부모회가 추천하는 학부모 4. 공사 감리인 5. 석면에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

	<p><u>7.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</u></p> <p><u>8. 교육지원청 시설담당공무원 1명</u></p> <p><u>9.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u></p>	<p><u>6.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</u></p> <p><u>8. <삭 제></u></p> <p><u>7.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u></p>
--	---	--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,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학교 석면 모니터단)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석면공사가 확정된 경우 「학교시설 석면 해체·제거 안내서」가 규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학교 석면 모니터단(이하 “모니터단”이라 한다)을 구성·운영한다.

②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, 공사규모에 따라 학부모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.

1. 학교의 장 또는 교감
2.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
3. 학부모회가 추천하는 학부모
4. 공사 감리인
5. 석면에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
6.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
7.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모니터단은 학교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, 잔재물 조사 진행을 주관하는 등 감시활동을 하여야 한다.

④ 모니터단은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⑤ 학교의 장은 현장점검 시 모니터단에게 마스크와 방진복을 지급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.

⑥ 그 밖에 모니터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.

제13조(모니터단 교육) ① 교육감은 모니터단에게 활동 전 석면안전과 석면 해체·제거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의 장은 모니터단이 활동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신 설></p>	<p>제12조(학교 석면 모니터단)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석면공사가 확정된 경우 「학교시설 석면 해체·제거 안내서」가 규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학교 석면 모니터단(이하 “모니터단”이라 한다)을 구성·운영한다.</p>
<p><신 설></p>	<p>②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, 공사규모에 따라 학부모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교의 장 또는 학교 교감 2.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3. 학부모회가 추천하는 학부모 4. 공사 감리인 5. 석면에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 6.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.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<p><신 설></p>	<p>③ 모니터단은 학교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, 잔재물 조사 진행을 주관하는 등 감시활동을 하여야 한다.</p>
<p><신 설></p>	<p>④ 모니터단은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</p>

<신 설>

⑤ 학교의 장은 현장점검 시 모니터 단에게 마스크와 방진복을 지급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⑥ 그 밖에 모니터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.

<신 설>

제13조(모니터단 교육) ① 교육감은 모니터단에게 활동 전 석면안전과 석면 해체·제거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② 학교의 장은 모니터단이 활동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2조 (생 략)

제14조 (현행 제12조와 같음)